

제423회 국회 **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의록**
(임시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상정된 안건

- | | | |
|---|-------|---|
|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 | 2 |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 | 2 |
|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 | 2 |
|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 | 2 |
|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728) | | 2 |
|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 | 2 |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이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혁신처에서는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마는 국무회의 참석 및 산불 대응을 위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0시09분)

○**소위원장 이수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 이어서 6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 간에 그리고 정부 부처 의견을 다 들으시고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과 아직 조금 더 논의를 이어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서 조문대비표 형태로 마련한 심사자료 별지 두 번째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2의 2쪽입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지난 소위 때 논의를 하셨으나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 중심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제2조, 각 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 중

에 다음 쪽에 나와 있는 희생자·피해자들의 정의 중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피해자분들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각 법안들이 대동소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이를 정리해서 통합수정의견안 형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4쪽에 나와 있는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지 두 번째 자료 9쪽에서 14쪽까지에서 나오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연계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위 때는 직접적인 희생자나 피해자 외에 추가로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지금 현재 직접적인 희생자와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들을 한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 가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의 김은혜 의원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안도 조문 위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2차 가해 방지 의무 규정 외에 2차 가해에 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동 특별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를 종합하면 추후에 다른 재난이나 참사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죄에 대해서 해당 특별법안에서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상단에 문금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특례를 문금주 의원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현재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 상한에 관한 연령을 이번 특별법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5세 미만까지, 공무원연금은 19세 미만까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상한을 이 특별법에서 확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입니다.

18쪽에 이수진 의원님 안과 권향엽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각 법률안들은 이번 참사 피해지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고 이견 없이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18쪽에 나와 있는 여객기참사로 인해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특별법에 둘 것인지, 두 번째 권향엽 의원님 안처럼 무안공항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대책을 특별법에 규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는 이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18쪽까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범위는 이 사고의 특성,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수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이번 사고의 특성을 감안해서, 특정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을 감안하고 또 유가족의 의견이나 공청회 때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범위는 부상자 또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가해 처벌과 유족연금은 각 부처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런 상황으로 확대해석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보다는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지원에 대한 조항은, 물론 무안공항을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려고 각종 시설 개선이나 또 조류 충돌에 대한 예방 대책을 기발표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법의 목적에 맞게끔 피해자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행정안전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을 광주·전남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번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통합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먼저 그동안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준에 있던 다른 입법례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희생자의 배우자’ 부분에 보면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전의 이태원법 같은 경우들은 피해자의 범위들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의 범위, 사실상의 배우자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집행상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문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상의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을 뒤쪽의 추모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하는 사람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쟁송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은 사실상의 배우자를 다투는 데 누군가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대상도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뭐 다른 것, 2차 가해 관련해서도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경화 법무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2차 가해 방지 관련해서 통합수정의견안에는 국가의 2차 가해 방지 의무 규정이 들어와 있고 지금 처벌 규정은 제외된 상태인데요.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현재 처벌 규정은 빠진 통합 수정의견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마 피해자 관련해서, 제2조(정의)에 관련해서 피해자에 관련된 정의에 제가 조금 더 확대했던 개념들이 있어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통합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희생자와 피해자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희생자는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 관련해서 방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해자의 범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필요한데, 그래서 피해구제신청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전진숙 의원님이라든지 권향엽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세월호라든지 이태원법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는 좀 명확하게 간략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 그리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을 지금 넣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희생자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범위를 피해구제신청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진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발언하고 있는데 잡자기……

○소위원장 이수진 잠시만요.

그래서 이것을 전진숙 위원님도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다른 거랑 연결이 되는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좀 정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진숙 위원님, 말씀 마저 더 해 주세요.

○전진숙 위원 방금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희생자가, 제가 지금 확대를 해서 당사자인 사망한 사람 이외 그 참사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수진 의원님 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희

생자를 그 당시에 사망한 사람으로만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질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심리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저는 그 기타 이외의 사람들까지 심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혹시 이 앞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실은 그게 지금 심리 상담 지원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는 지점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방금 배우자만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관련해서 자녀 수령 연령 제한에 관련된 확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24세 공무원연금 18세까지 하는데, 실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취업하는 시기가 뒤로 확 밀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연령대가 좀 돼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기에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다른 법령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 특별법안에서만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혹시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비어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첫 번째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재 피해자를 만약에 한정을 하게 되면 뒤에 말씀하셨던 사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통합수정의견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국민연금 또, 인사혁신처에서 나오셨지요? 그 답변을 좀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인사혁신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에 대해서 특별법에 특례를 둔 전례가 없고 또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기존의 다른 법안에 특례를 둔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선례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과 상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만드는 게 법인 것 같고요.

형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적용하거나 문제가 되었다든가, 그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지금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진숙 위원** 일괄적인 처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법 아닙니까?

그리고 17페이지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관련해서 지금 통합조정안

은 그냥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안은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다 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는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사안들이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조정안에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지난번 1차 회의 때 대체로 의견을 말씀드려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가 가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조금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상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우자는 이혼과 재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한 배우자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진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경상북도 산불 났던 곳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모호하게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것보다는, 사실 무안공항은 그 공항을 매개로 해서, 공항이 없었다면 거기에서 관광업을 개업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 부분에 관광업도 넣어 주고 소상공인들도 넣어서. 그건 다른 경제부처에서 할 일들이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법안에 담아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보니 우리가 목적이나 정의, 여기까지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고 희생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저나 김은혜 의원안이나 약간 차이가 있지요. 있지만 그것대로 한다면 혹여 이후에 발생하는 희생자·피해자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저도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방금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니 경제적인 것들이 상당히 크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법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이게 다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산불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무안공항 그다음에 비행기, 여행업, 관광업 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쪽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자라든지 피해 복구·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다가 보완할 수 있게끔 담았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그분들이 잘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런 문제들이 치명적이 돼서 폐업을 하고 가정 공동체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별개가 되는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1년 뒤든 2년 뒤든 아니면 수개월 뒤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참사가 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이후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면 정부가 특별법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책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정부는 방안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모위원회에서 구제 피해자라든지 내지는 피해자분들 플러스알파로 심리치료를 받다가 관련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희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혹시 정부에서 답이 있으세요, 대책이?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저희들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당연히 문화·관광도 포함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 등’이라 해서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제활성화 방안에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법문안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저는 희생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지만 이후에 더 생길 수 있는 희생자를 생각했을 때, 생기면 안 되겠으나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누구도 확실하게 안 생길 거야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열어 두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고는 어떤 특정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고 현장에서 같이했던 소방관 경찰관 또 국과수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사이드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그분들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 규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기재부라든지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법에서, 제가 보기엔 구멍인 것 같아요. 손실보상이라든지 기타 사고와 지역과 다 연계해서 발생한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셋다운을 지시해서 생긴 것이 아니면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 산업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셔야 그래야, 희생자 외에 피해자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열어는 놓아야지. 지금 당장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구제위원회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열어 놓지 않으면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우리가 4·3이나 여순이나 여러 특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방대하고 아래서 피해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신고하고 발굴하고 또 역사적인 일이니까 또 어디 다른 데 잊혀져 있다가 하는 그런 경우는 피해자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분들을 피해자로 직시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딱 일어난 피해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앞의 검토의견처럼 이렇게 하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 부분에 그 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을 담는 게 맞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예를 들어서 피해자 중에서 이런 게 트라우마가 돼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증명하기도, 이 법에 모호하게 담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남·광주를 피해지역으로 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괜찮은데 피해자 부분을 그렇게 모호하게 넣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특별지원방안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한다면 사실은 보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에 어느 정도 담아 주시면 그 앞에 피해자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끊고 갈 텐데 뒷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 앞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기재부 입장에서는 문화·관광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으신 피해지역의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험 영역에서 커버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서 집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 같고요. 영업손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까지 재정이 들어가 가지고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기재부는 그렇게 우려를 안 했던 것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들까지 고려해서 사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대책을 안 내놓으시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

○소위원장 이수진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세월호 문안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례를 보면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부 사업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관광업계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보니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문체부장관께서도 그 지역에

내려가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응자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연장한다든지 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것 같으면 그 문안을 넣고 경제 활성화 대책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이 되면 정부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로만 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22쪽의 치유휴직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모두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의 부분 그리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할 것인가 1년 이내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다음 소위 때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시는 거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4쪽의 교육비 지원 부분입니다.

역시 교육비 지원 부분도 대부분의 법률안에서 모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를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대상에 관한 부분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지원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번 소위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역시 다음 소위 때 확인하시는 걸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 6개월이기는 한데 일단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조문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이 그간 1년과 6개월에 대한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키되 필요한 경우에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김은혜 의원안 기준으로 보면 12조입니다. 12조 1항 2항이 있는데 항을 하나 신설해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지금 조문이 정해져 있는데 ‘몇몇 조 몇 항에 따른 참사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치유휴직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로 하게 되면 기본 원칙도 지키면서 치유휴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교육부.

○**교육부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교육부 관련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비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초·중등, 고등교육(대학)입니다.

먼저 초·중등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재학 중일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을 초·중등 부분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초·중등은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정도가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하고 고등 부분은 각 소관 파트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이승묵**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 이승묵입니다.

영유아 파트는 보육료가 이미 무상으로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특별활동이나 체험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나 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요, 보육료는 굳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입학금 수업료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지난주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지난주까지의 안은 김은혜 의원님 안으로 해서 사고 당시라는 단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현재 지금 1년간 지원하는 걸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좀 범위를 넓혀서 사고 당시라는 표현을 삭제하면 이수진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은 수용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4년을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은 전액 지원을 하고요, 현재하고 동일하게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게 좀 완화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전체 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8구간 이하 학생들입니다, 기초생보자 포함해서.

거기에 8구간이 3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8구간이나 7구간에 들더라도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이렇게 2배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10구간이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부유층입니다. 그래서 9구간은 100만 원, 10구간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등록금 50%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2학년 3학년 4학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한 3년에 1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신다라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상보육·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등록금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등록금이 국가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구간 설명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1년은 전액 그리고 2·3·4학년은 기존의 등급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교 1년을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차액을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9등급이나 10등급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셔서 잘 검토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먼저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20페이지인데요. 지금 통합조정안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강행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페이지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통합조정안, 일단 전문위원님 보시면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분들 이외에도 실제로 자원봉사자들, 현장에 왔던 취재진들이 되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기를 제안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치유휴직과 관련해서는 3년 이내 그리고 이렇게 6개월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백선희 위원** 3년, 1년을 다 수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지요.

○**전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약간 좀 다른 이견이 있어요. 그것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1학년 때는 전액을 하고, 대학등록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구간을 그대로 적용을 하되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9~10구간까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수진** 50%.

○**전진숙 위원** 50%지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가 안 계시잖아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자산의 규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모가 없는 상태 속에서 생계가 유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될 건데 기준에 있는 자산이나 이걸 감안해서 구간을 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

들이 재산이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실제 장학금 대상자로부터, 남들은 100%를 다 받고 전액을 다 받는데 50%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체 4학년까지 전액을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 주셔도 돼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3·4학년 9구간 10구간을 50%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9구간이 23년 1학기 기준으로 월수입이 64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4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처음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9구간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8구간까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9구간 10구간에 대해서도 2·3·4학년 전액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소득에 따른 국가장학금 배정 이것에 대한 대원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8구간까지는 전액지원, 9구간 10구간은 50% 지원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전제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을 주는 데 있어서 실제로 소득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을 할 때는 실제 양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에 전제를 놓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건 모르겠어요. 실제로 9구간과 10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현재 재산 조사는 안 돼 있고요.

○**전진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제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생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자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어디는 적용이 되고 되지 않는 이런 상태는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방금 말씀하신 자산 규모 4억 이상, 월수입 64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게 9구간?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절반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로 그 아이들의 조건이 월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예.

○**소위원장 이수진** 자산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월수입은 없을 텐데, 그러면 둘 중의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장학금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평균치로 재산하고 소득을 본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에는 그건 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자산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런데 월수입은 사실 굉장히 없거나 힘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구간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밑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액 장학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예.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주시면 이것도 충분히, 우리 교육부가 그래도 좀 전향적 방안을 마련하시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제가 지금 현재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돌아가서 내부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사실 오늘 저희 두 번째 소위인데 이거를 좀 빠르게 결정을 하면 좋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알아는 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월 개인소득이 없을 가능성성이 큰데, 그 기준만 좀 물어보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충족을 할 경우에 그런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거는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예,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고요. 9구간 10구간 이쪽으로 지금 가능한지 여부는 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지금 9구간 10구간 전액 다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전진숙 위원님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받게 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수준이, 특히 월 소득 수준이 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구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의 부분은 만약에 제가 물어보는, 2개 다 하나라도 충족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구간도 좀 더 교육부가 반영해라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고용노동부에 제안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걸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그 전의 통계를 보면 이걸 다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 어쩌다 한두 명,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원회에 나가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 또 심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냥 아주 짧게 간명하게, 의사 소견서 제출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거, 다른 입법례 같은 경우는 구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은 지원의 수준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의 어떤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이달희 위원 대한민국 의사가 심리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한 6개월쯤 더, 플러스 6개월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는 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의사가 제출하는 소견서를 누군가 또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우리가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장애가 생겨서. 의사 소견서 내면 나는 6개월쯤 더 치유휴직을 할 수 있는데 또 위원회에 제출하고 거기 나가서 내가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안정,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믿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6개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깔끔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태원이나 이런 데 치유휴직 쓴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놔두면 어쩌다 생기는 한두 명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고용노동부에서 추모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치유휴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용 수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입법례들을 보면 구제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하도록 한 거는 지원내용들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다른 부처나 다른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수준을 하고자 이렇게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 사항들을 보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의사 소견서를 본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한다라고는 저는 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 휴직을 주게 되면 어느 기관에인가 통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번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조·복구·치료·수습에 자원봉사하고 취재를 넣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자원봉사가 가벼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수습 과정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취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어려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재하시는 분이나 자원봉사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 법안에, 여기 ‘등’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등’에 그분들이 포함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은혜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수습·조사까지만 되어 있고요. 전진숙 의원님께서 자원봉사하고 취재가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문 구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을 다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복구·치료·수습·조사만 포함되는 열거가 아니고 ‘등’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원봉사라든지 취재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조문 구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포함돼서, 저희는 그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활동도 하고 했지만 또 저도 가 봤지만 자원봉사한 분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자원봉사·취재 등’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반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 등’까지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자원봉사 등.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수습 및 조사, 자원봉사 등’까지 하게 되면 취재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뜻을 받드는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말씀하세요.

○**전진숙 위원** 그렇게 해도 전체에서 개념이 포함이 좀 되는데, 제가 참사 이후에 기자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정제된 형태의 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님들이신데 늘 현장에 그분들은 가장 먼저 달려가요. 방송사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 모르나 그분들이 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거물들도 만들어 내고 이런 노고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의 역할을 하는데 늘 그들은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어이 넣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비판도 하고 동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그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차관님, 담고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현장감을 중요시하는 언론사 전체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에 주로 젊은 기자들이 나가지요. 그 기자들의 삶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좀 체킹을 하고 갈 것 같아요, 법에 담으면.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라는 게 밑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하고 그냥 ‘등’ 속에 숨겨져서 당당하게 못 쓰는 그런 부분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께서, 그때 무안 공항에 가 보면 특히 올라가는 계단에 많은 취재진들이 계시고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 체계에서는 ‘등’이라고 예시로 하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서도 우리 여야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 등’까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차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생활하시고 또 그런 인연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봉사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고용노동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빠른 논의를 위해서 35페이지 보면, 죄송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추모위원회 보면 2항의 1호에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거기다가 ‘치유휴직’을 명문화해서 넣어 주시고요.

저희가 3년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다만 다른 거에 대한 치유적인 전반적인 것은 여기서 결정하도록 좀 해 주시고……

○전진숙 위원 어딘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36페이지 통합수정의견안의 ‘00조’라고 돼 있는 것의 2항의 1호.

○전문위원 임종수 위원님들, 전문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35쪽이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35쪽의 지원·추모위원회 설치 규정의 하단 보시면 2항에 지원·추모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열거돼 있습니다. 첫 번째 1호가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고용부에서는 ‘심리상담·교육비·치유휴직’ 이렇게 치유휴직 단어를 넣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넣어 주셔서 전체적으로 치유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한번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사 소견이 좋은지 의사 진단서가, 제가 현장에서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구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절차들은 간명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거는 소견서로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소견서로 하는 게 나을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위낙 소견서라고 저희 첫 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하나 더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9조 15세에 대한 특별지원금, 그거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수진 그거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는 의견.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취재 등’을 넣어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닌데요. 다만 참고사항으로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경찰·소방·해경 같은 경우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심신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치료 같은 거를 제도화해 가지고 조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소위원장 이수진 그게 아니라 15세 미만 지원하는 거 의무조항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바꾸는 거요. 그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장님, 그거 넘어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별도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소위원장 이수진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소방·해경·경찰 같은 경우는 항상 재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심각한 현상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차원에서 심신수련원이라든가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제도화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사회병리 현상으로서 심신에 대한 불안정성이 사회문제화가 되니까 각 회사들도 지금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직업 특성상 현장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런 심리치료가 제도화되어 가는데 무안 사고에 대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항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 회사들이 심리치료를 제도화를 해 나갈 건데 무안공항만 이런 거를 하는 게 과연 전체 방향과 맞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는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기재부 국장님이랑 위원님들 시각이 약간 다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랑 민간은 다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심리치료는 지원이 만들어지지 그냥 아주 큰 대기업 빼놓고는 언론사들도 작은 언론사부터 다양한데, 노조 없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기업이 지원하고 보완해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매우 다르다, 현장은 매우 다르다.

그리고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젊은 친구들은 인사고파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다이렉트로 윗사람한테 호소하거나 지원해 달라고 얘기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참사를 통해서 이럴 때 취재도 집어넣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본인의 권리라든지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사회구조도 한편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기업마다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다,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기재부랑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15세 미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저희 교육부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셨던 대학등록금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평생직업교육관 최창익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대로 학생이 월소득은 0원일 확률이 높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하셨습니다.

저희 계산법은 구간의 경계값을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소득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만약에 0원의 월수입이 있고 재산이 10억인 경우에 환산액은 월 1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8구간에 해당돼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9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금액은 매년 일정 금액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9구간 10구간은 소득구간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백선희 위원 9구간 10구간을 소득구간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수진 소득, 그러니까 자산 말고 소득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선희 위원 자산을 보지 않고 소득만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예, 그거는 계산법이 원래 월소득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이기 때문에……

○백선희 위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월소득이 없으면 재산이 10억인 경우에는 8구간에 해당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거 같아요.

○백선희 위원 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본다라고 하는 거네요.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꾸 기본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항공기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라고 했지 소득이 있으니까 안 주고 소득이 없으니까 주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이런 방식이 되면 다시 전액이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관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부모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었어요. 그 잃은 희생자 가족에게 또 아직은 미성년자 애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법도 적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소득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희생자들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위원님, 저희가 가서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것도 세월호하고 다르게, 지난번에는 세월호하고 동일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향적으로 하라 말씀하셔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해서 검토를 새롭게 처음으로 하게 된 거고요.

○**전진숙 위원** 아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배려, 배려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9·10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거고요. 거의 없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원의 우선순위 어떤 돈을 먼저 쓸까인데 우리가 이 사업에 해당하는 돈을, 아까 1학년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돈을 먼저 쓰지 말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일단은 등급별로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고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하게 되면 예산의 큰 부담 없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의** 그런데 재원은 저희가 국가장학금 예산이 5조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항상 국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희 위원** 물론 국가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요. 재난 예산 말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일차적으로 모두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재난 예산을 쓰게 되면 그 남는 돈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 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전진숙 위원님께서 또 광주가 지역구시니까 현장의 꼬마들이 눈에 띈하고 그들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울먹이실 정도로 이렇게 격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 충정이나 그 마음은 받아들여서 교육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기준보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자녀를 두고 갔을 때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교육부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참사 희생자들이 났을 때 그 아픔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교육부도 굉장히 고민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기준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데 소득이 없을 경우가 많지요. 한쪽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한 부모가 소득 구간이 높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부가 이 부분을 짜 온 것 같은데 한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한 부모가 사업이 잘되고 그래서 상위계층에 있을 때

는 사실 그 부모님이 등록금의 50% 정도는 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법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검토해 왔다.

사실 4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두 번 세 번 주장한 게 우리가 이 정도 나라, 3만 5000 불 되면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0세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생각하니 갑자기 부모를 잃은 학업을 못 마친, 이 사고 말고 우리 그런 국민들 생각해서 교육부가 마련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신다니까 전진숙 위원님의 그런 마음과 또 제가 우려하는 이 부분을 함께 국민적인 이런 시각에서, 한 부모가 돈을 아주 많이 버는데 그 등록금 50% 깎아 줘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전 위원님은 양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를 예상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경우를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교육부 다시 검토해 주세요. 사실 부모님이 대기업이나 좋은 큰 기업 다니시면 복지 차원에서 자녀 학자금 대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기재부, 15세 미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15세 미만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건에 한해서는 법에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게 15세 미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네 건이 이미 올라가 있고 거기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 사항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다’로 좀 규정을 해 주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할 건데 다만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을 넣게 되면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해 주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도덕적 해이는 취소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취소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번에는 정확하게 지원을 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한다는 것에는 동의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일단 그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법이랑 관련돼 있어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논란의 대상의 중심에 15세 미만 아이들이 늘 놓이게 돼서 똑같은 반복을 할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렇게 이번만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한 말씀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통합수정의견안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세 미만이 지원대상이 돼야 되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각종 법안에서는 그 이유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전문위원, 그 이유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임종수 지금 2항을 보시면, 21쪽입니다. 15세 미만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금 수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2항에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안에 있는 그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돼서 받지 못하는 희생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지금 차관이 얘기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법 732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가 이렇게 고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상법 732조가 법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것이고 어떻게 개정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법 732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건지 그냥 가입을 안 한 건지 이게 법률 문구상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률안에서 15세 미만의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특별지원금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특별지원금의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만 법률은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특별지원금을 주는지까지 사실 그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이라면 규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의 인과관계를 굳이 다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해서 통합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차관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더 여기에 점검해야 될 게 없을까요?

그러면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방금 논의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면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은 재량으로 일단 '할 수 있다'로 표현하고 기재부가 지원에 대해서 동의한 것을 확인하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리상담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및 취재'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휴직 부분은 아까 고용부에서 얘기한 대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문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모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는 빼도록 하되 이게 혹시 대통령령으로 더 정할 것이 있는지 등등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문구를 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다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교육부 의견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논의하실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보시면, 트라우마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 전진숙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에서 이번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지난 소위에서 기준의 국가 또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이번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동시에 현재의 재난대응심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고드릴 사항은 41쪽에 있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단이나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보조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수진 의원님 안하고 전진숙 의원님 안, 서삼석 의원님 안, 권향엽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우선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시고 그리고 4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수진 의원님과 권향엽 의원님은 유가족협의회를 민법상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시고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구분된 방식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이러한 유가족들의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 해당 공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유가족 측에서 이 법인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31쪽 트라우마센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18년도 법에 따라서 트라우마센터가 새로 다 확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좀 신중한 검토 입장입니다. 그 와중에 지난 이후에 기재부에서도 의견을 주었습니다.

혹시 관련 의견 가져오셨습니까?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 측하고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가족 측에서는 트라우마센터 같은 데에 지원할 게 있으면 차라리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더 지원하는 다른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체계에 트라우마센터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고, 참고로

유가족 측에서 기존에 세월호 같은 경우 이용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가 국립나주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명을 더 충원해서 이 2명을 유가족협의회에 교대로 파견을 해서 상시 1명씩 근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침 이게 이번에 추경이 되어 있는데 따져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인건비가 3600만 원 운영비가 1억 64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청해서 6월 달에 직원을 뽑고 7월 1일부터는 1명씩을 유가족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곳에 보내서 상시 근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이게 상시 인력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상시 인력입니다. 2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니까 2명이 나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채용할 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국립나주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진숙 위원님 또 백선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9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무안 같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필요하다’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2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려 그립니다. 그래서 2명이 상시 교대로 가 가지고 1명 정도는 지정된 데 가서 항시 교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6월 달에 사람을 뽑아서 7월 1일부터는 그쪽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그냥 나주센터라고 칭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나주센터에 상시 인력으로 2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추가입니다.

○**정준호 위원** 저희가 소위에서 검토하다 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추적조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2명 늘린 인력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추적조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의견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지금 추적조사는 금년 3월 달부터 12월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반 도비 반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말씀하십시오.

○**전진숙 위원**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안 주신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나주정신병원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호남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트라우마센터의 인력에 대한 전체,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구조 속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재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 정도 들려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협의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별에 대한 상담도 지원을 하실 거고요, 전체 집단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실 거고, 단순히 심리상담의 그 상흔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하게 될 건데, 과연 그분이 유가족협의회에 가서 계신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정준호 위원님께서 장기추적연구와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제가 올렸던 안 중에 하나는, 지금 33페이지의 통합조정안에 ‘추모사업 등 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장기추적연구를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킨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 안은 별도의 항목을 빼서 장기추적연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방금 3억 예산을 해서, 아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하고 그걸 받아서 바로 올해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 공청회에서도 증명이 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전문위원님, 지금 통합조정안에 장기추적연구라고 그냥 들어가 있어요. 삽입되어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빼든지 아니면 29조에 추모사업 및 장기추적연구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기추적연구를 3억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입니다.

○전진숙 위원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트라우마센터에서 진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정확하게, 학교나 이런 데에다가도 외주를 줘서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의 하나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정신건강적인 측면 이외에 이들의 삶에 관한 문제도 계속 모니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 공청회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시행을 할 때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됐든 마음회 복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항공기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좀 더 집중적인 재난대응 심리지원체계 아래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5·18과 관련해서 4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치유 프로그램 그다음에 개인치유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끊임 없이 거기에서 치유 과정을 하고 서로가 자조모임들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실은.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마는 유가족대표단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마음회복지원센터나 트라우마센터에 이걸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걸 복지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저희한테도 의견서가 그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유가족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 요구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유가족 측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그대로 받는 걸로 수용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적조사 관련해서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혼자 할 수 없을 겁니다. 시행 과정에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정신과 그쪽하고 서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올해 예산만 지금 3억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3억입니다.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항상 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아니라.

아까 세월호 말씀 주셨는데요. 세월호의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연계도 안 되어 있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계속 제안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하거나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다고 하는 걸로 전체를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리고 2명을 저희가 새로 뽑아서 보내는데요 보내는 장소는 사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가족협의회는 그중의 하나의 대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 뽑으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일단 복지부차관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력과 예산을 빠르게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고 초기이지 않습니까? 수습 초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두 분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1년까지 최고점에 이르다가, 물론 어떤 분은 3년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두 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인력과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월호 온마음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듣기로는 꽤나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참사를 당하고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진술인의 의견과 같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초기에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한다면 이전남의 광역별 트라우마센터에다가 부설로,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부설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진숙 위원님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인력과 더불어서 조직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기에 인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또 인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예산과 인력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680명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호남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4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 별도 케어를 해 주고 계신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어디 기관에 어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거기에다 상시 파견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재부하고 저희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 사단법인 관련해서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고로 유가족협의회 측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서 대안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유가족 측 요구라든가 아니면 기재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장황한 얘기라 혹시나 설명을 원하시면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면 그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지금 유가족들과 협의 중이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그리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유가족 측에서도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단계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언제까지 논의가 마무리될까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지금 축조심사 진행 중이니까 축조심사 마무리하시기 전까지는 협의회 측하고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사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정부 측 의견들이 조율돼서 나오면 마무리를 할까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오늘 들어 보니 다른 부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복잡한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사단법인 공익법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마무리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빠른 시일 내에 설명드리고 유가족협의회로부터 합의를 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보통 참사에 대한 사단법인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유공자단체라든지 중소기업·소상공인협의회 이런 데는 사단법인을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조적 성격에 따른 정책 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조적인 성격의 어떤 치유와 회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많은 참사의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끼리 같이 함께 공동체가 서로가 위로가 됐던 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재부가 빠르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다음.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논의하신 내용에서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신 바대로 직접 별도로 설치하는 근거 규정은 제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재단 부분은 기재부하고 유가족협의회 측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46쪽입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하신 것에 이어서 이번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을 이번 특별법에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사 사고조사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46쪽에는 이수진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권향엽 의원안, 세 안에서 현행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별지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문금주·서삼석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케이스나 이태원 케이스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법률안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31~47쪽까지 조문대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별지에 함께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사안 공히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고조사에 특별한 절차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를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소위 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나 사고조사 관련한 특례규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이나 객관성 등에 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사항은 시행일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 시행을 위한 최소한 그 기간을, 시행일을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사조위 독립성 관련해서는 현재 사조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니까 사조위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조위법 개정 전이라도 독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항공실장 철도국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화하는 방안 또 예산이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실에서 독립돼서 운용하는 방안을 보고드렸고 그런 방안들이 사조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나 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저희가 추려 보니까 한 7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후 시행하는 걸로 하되 즉시 시행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골라서 바로 즉시 시행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일상생활돌봄 지원, 금융부담 완화 같은 것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즉시 시행하는 걸로 입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혹시 적용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60페이지 보시면 제5조하고 6조가 있습니다, 통합 수정안 기준으로 봐서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적용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법을 차용해서 오다 보니까 약간 본문하고 조항이 맞지 않고 내용도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아마 세월호 때의 특별법을 차용해 온 것 같은데 그때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휴업·휴직을 했었던, 법 근거 없이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법 시행 이후에 그 기간도 합산해 달라고 하는 적용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이 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이태원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6조를 5조로 바꾸고 5조는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5조를 삭제해 달라고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안으로 보면 12조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허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13조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경위는 아마 다른 입법례를 차용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과 안 맞게 들어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그 내용은 이해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는 저희들이 법 시행 이전에 허용한 것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것에 대한 소급효를 인정해서 치유휴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례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전문위원님 이건……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실에서 고용부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서 부처 필요성 판단한 후에 포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예, 다시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서도……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잠깐만요.

그것 넘어가기 전에, 제가 현장에서 통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아마 휴업이나 휴직을 한 경우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설령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문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일에 있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그 관계성을 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 내용 확인하고 다시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위원장님, 46페이지 사고조사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조사 특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특히 사고조사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명에 대해서는 장관 등 행정부 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사고조사단 임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사고조사단이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임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사고조사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6명 확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 기재부가 다 동의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해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러면 그게 상시 인력으로 증원이 된 거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그래서 여기 사고조사단 추가 임명은 법에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는 이 조문 자체가 사조위 독립성과 관련돼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ICAO 규정도 살펴볼 필

요가 있고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조문을 넣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조위법 개정 때 논의를 하고 다만 법 개정 전에 할 수 있는 독립성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사상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국토부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개정법안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여기의 핵심은 항철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안이 다 준비가 돼서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발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감사합니다. 현재 한 5개 정도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통합·병합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위원님들 다른 질의 또 없으신가요?

○**백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수진** 잠깐만요, 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사조위 구성 관련해서 차관님하고 얘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인데, 저희 특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다양하게 제대로 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유가족분들도 그걸 원하시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조위법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다를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특별법에서 그동안, 그전에 21대 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논의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도 있고. 그러나 여야가 예방이나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라고 제가 간사님한테도 말씀은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전제, 유가족분들께서도 빠르게 국토위에서 법안들이 통과가 되길 원하실 거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인데 그냥 이걸 다 뺀다는 것은 저는 사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부대의견이라도 좀 달아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조위의 인사·예산 독립성에 대한 보완조치, 어차피 차관께서도 법 통과 이전에도 하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 정도 부대 의견,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 정도는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 놔야 국토부에서 사전적으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의 독립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리고 또 국토위에서도 제가 말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게 있으셔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시행일 3개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더 연장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6월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 규정은 즉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위 활동 기간을 고려한다라면 나머지도 한 두 달 정도로 해도, 이게 막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

노동부나 이런 데도 보면 그전에 했던 것들이고 교육부도 다 했던 것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만 답을 좀 빠르게 주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 두 달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정의견으로 부대의견 플러스 기한을 한 달 정도 단축하는 것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위 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복지부차관님,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이번 여객기 참사는 그 성격상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수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진숙 위원님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 그리고 저도 그렇고 심리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셨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 안산트라우마 권역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안산의 마음건강센터에 48명의 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산시의 지역 특성상 세월호와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매우 잘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많은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직간접적인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혹시 정부 쪽에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용어 정의에서 유가족단체와 유가족협의회가 조문에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어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수진** 유가족단체와 유가족협의회, 이것도 다시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백선희 이달희 이수진 전진숙 정준호

○**청가 위원(1인)**

김대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백원국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단장 박정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경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정경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